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FAQ





## 본인·친족정보 입력

**Q** 본인정보입력 단계에서 직급 조회 시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등록의무자는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A** '공직유관단체'로 검색하여 공직유관단체(기관장), 공직유관단체(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이사), 공직유관단체(1~4급) 등 본인의 직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직계존속의 사망, 딸의 결혼 등 등록대상 친족이 제외대상이 되었거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친족의 등록상태 변경은 신고서 작성 중에만 가능합니다.  
[신고서작성] → [친족정보 입력] 단계에서 해당 친족을 클릭하여 '등록상태' 항목의 '등록제외자', '고지거부자' 체크 후 저장하면 총괄표에서 자동으로 해당 친족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Q** 친족정보 입력 시 본인소유 집에 미성년 자녀가 같이 거주할 경우 거주형태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등록의무자 또는 배우자 집에 미성년 자녀가 같이 거주할 경우 '자가'로 선택해도 무방하며, '기타'로 선택 후 '의무자 소유', '의무자 자가' 등의 내용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Q** 친족정보입력에서 미등록친족이 있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미등록친족이란 정보제공동의는 되어 있지만, 친족정보에는 입력되지 않은 대상으로 해당 친족이 등록대상 친족이 맞을 경우 '비고'란의 '미등록친족 추가'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고, 만약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된 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 고지거부 신청

**Q** 최초신고 대상자가 되어 고지거부 신청을 하려 하는데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메뉴에서 친족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거부 신청은 신고서 상에 등록이 되어있는 친족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고서작성] – [친족정보입력] 단계에서 등록대상 친족의 정보를 입력한 뒤 고지거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 고지거부 신청을 진행하는데, 진행단계가 '작성중'으로 나타나면 신청이 완료된 것인가요?

**A** 진행단계가 '작성중'으로 나오는 것은 고지거부 내용을 저장만 하고 제출이 되지 않은 미신청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경우 고지거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작성중'인 해당 항목의 상세화면에서 '제출' 버튼까지 클릭해야 '제출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고지거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Q** 고지거부 제출 후 증빙서류 등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거부 신청이 저장만 되어있는 '작성중'인 상태라면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지만, '제출완료' 상태라면 의무자가 수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출완료' 상태에서 추가 증빙자료 제출 등 수정을 하려면 소관 기관의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고지거부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혹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기변동 대상자 허가신청은 이번 정기변동신고 시에는 '21.1.1.~2.1.까지 가능하며, 재심사 신청은 정기변동 신고기간인 '21.1.1.~3.2.까지 가능합니다. 수시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허가신청만 가능하며,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자는 로그인 후 화면상단에 보여지는 고지거부 신청마감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거부 신청기한은 법령상 명시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총괄표 작성 – 토지, 건물, 자동차

Q 부동산정보열람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 되나요?

A 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정보와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자료를 제공받고, 건물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정보와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자료를 제공 받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자료로 반드시 본인의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소유여부에 따라 재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신고 시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최초신고서 -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변동신고서

(신규취득)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기존신고) 평가액으로 신고한 항목은 최근 평가액을 반영하여 신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항목은 실거래가격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 시스템 상 가액은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실거래가격은 현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 금액을 의미함

Q 기존에 건물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현 시점 공시가격이 낮아져 현 가액을  
변경하려 하니 ‘전 가액이 실거래가격인 경우는 현 가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반복되며 진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 가액이 실거래가격인 경우에는 ‘유지’버튼 클릭하여 이전 신고 금액을 유지해야  
하고, 전 가액이 공시가격인 경우에는 ‘변경’버튼 클릭하여 감소된 금액으로  
신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Q** 기존에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잘못 신고했는데, 수정하려 하니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A** 단독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항목은 바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로 진행해야 하며, 실거래가격은 0원으로 입력한 뒤 사유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 기재 후 저장해주세요 합니다. 그 다음 새롭게 추가 클릭하여 ‘공유자 추가’로 각 지분만큼씩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건물을 분양 받았는데, 신고 해야 하나요?

**A**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중도금까지 납부가 진행되었다면 권리종류를 ‘분양권’으로 선택한 후 납부 된 계약금 + 중도금을 ‘가액’란에 분양권 총 금액을 ‘총분양가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건축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를 배정 받기 전에는 기존 건물로 신고해야 하며, 동·호수를 배정 받았다면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액 등 총 납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Q** 거래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 진행 중

-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타인 소유  
이지만, 재산신고서 작성 시에는 해당 부동산을 신고하고 ‘비고(변동사유)’에  
해당 내용을 기재
-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에 자세히 기재

**매입 진행 중**

-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중도금을 일부 지불한 경우 취득형태를 ‘매입의 경우’로 선택하여 ‘실거래  
가격’란에 등록기준일까지 지불한 금액을 신고하고, ‘비고(변동사유)’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재

**Q**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어떻게 삭제하나요?

**A** 해당 부동산 상세화면에서 ‘소유권 상실’ 체크하면 가액은 자동으로 0원 처리되며, 하단 **현실거래가격에 매도금액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Q** 기존에 신고한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변동처리 후 저장하려 하니 ‘법정동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발생하며 저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부동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주소에 법정동 코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로,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소재지 오기정정’ 선택 후 주소를 다시 검색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는 정보열람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신고하고 있는데, 금액은 어떤 것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자동차 가액은 등록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동차 보험증서 상 차량기준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없을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실거래가격 순으로 기재합니다.

**Q** 기존에 공동명의 자동차를 단독명의로 잘못 신고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A** 단독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항목은 바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로 진행해야 하며, 실거래가격은 0원 적은 뒤 사유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 기재 후 저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추가 클릭하여 ‘**소유자 추가**’로 각 지분만큼씩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총괄표 작성 - 금융

Q 금융정보열람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어떤 정보인가요?

A 각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등록기준일 기준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100% 정확한 자료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 금융정보 일괄반영 팝업창은 어떤 기능인가요?

A 친족정보입력을 완료한 뒤 다음으로 진행하면 총괄표 작성 단계가 나오는데, 해당 신고서의 정보제공 대상자에 한해서 금융정보 일괄반영 팝업이 발생합니다. ‘동의’를 체크하여 진행하게 되면 예금·보험, 증권, 채무에 대해서 제공받은 자료로 일괄 반영되며, ‘미동의’를 체크하여 진행하면 각 항목별로 금융정보활용입력 등을 통해 재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자료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회신된 항목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금융정보 일괄반영에서 ‘미동의’했는데, 개별적으로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 대해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정보가 나타나며 여기서 누락된 계좌나 현재가액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계좌가 있는지 확인한 후 반드시 맨 하단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일괄저장 후 총괄표 목록의 계좌별 상세화면에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Q** 금융정보활용입력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금융정보활용입력의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계좌는 해약된 계좌이거나,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이번에 회신받은 계좌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계좌번호를 1234라고 신고했으나, 이번에 금융기관에서 계좌 번호를 01234로 제공했을 경우 계좌 1234는 붉은색으로, 계좌 01234는 검정색으로 신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좌 01234는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붉은색 계좌인 1234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현재가액을 0원으로 변경해주며, 0원인 상태 그대로 ‘일괄저장’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단, 제공받는 금융정보는 100% 정확한 자료가 아닌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 또는 오태신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검토 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Q** 금융정보활용입력으로 반영했는데 변경처리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친족 중 정보제공 미동의자 등 회신 받을 수 없는 기관의 계좌, 비상장주식, 채권, 건물임대채무 등 제공되지 않는 정보의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이 아닌 개별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동 처리해야 하는 항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목별 상세화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Q** 회신받지 못한 계좌가 있어 개별적으로 추가하려 하는데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A** 검색되지 않는 예탁기관을 등록하는 방법은 예탁기관 검색창에서 ‘기타’로 선택 후 목록에서 직접 예탁기관명을 입력하는 란에 예탁기관명을 직접 입력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소유 중인 건물을 임대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먼저 소유 중인 건물은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채무항목에서 추가하여 ‘건물임대채무’로 받은 보증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채무액으로 신고하며, 매달 받는 월세는 재산이 아닌 소득이기 때문에 채무에 등록하지 않고 변동요약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단, 보증금 없는 월세는 채무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Q** 총괄표를 모두 작성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데 ‘조회자료에 비상장주식(○건), 채권(○건)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증권에서 회신된 정보 중 **비상장주식 또는 채권정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과 채권은 금융정보활용입력으로 자동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열람] 내용을 참고하여 총괄표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메시지는 무시하고 다음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총괄표 작성 – 기타 비상장주식

Q 법개정 이전에 신고했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변동처리 하나요?

- A 총괄표 항목에서 이전에 신고했던 비상장주식을 클릭하여 현재 보유중인 경우 ‘일부매도 또는 매수, 법개정에 의한 변동신고’로 체크하고, 전량매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량매도’에 체크합니다.  
단, ‘일부매도 또는 매수, 법개정에 의한 변동신고’에 체크한 경우 ‘기타 비상장 주식등록/변경’을 클릭하여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Q 상장 폐지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상장 폐지가 되었더라도,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 되기 전까지는 ‘기타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법인등록번호와 액면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법인 등기 열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법인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기업정보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평가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체크하여 정보취득 노력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면 기업의 재무정보 입력 없이 액면가로 계산됩니다.

## 총괄표 작성 – 신고내역검증

**Q** 신고내용과 회신내용 비교표에서 부동산의 신고건수와 회신건수가 다른 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A** 신고내역 검증에서 건수 비교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것이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자료는 행안부와 대법원에서 각각 제공되는데, 주소 표기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건물임에도 2개로 회신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고건수 1건, 회신건수 2건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및 분양권은 신고대상이나 회신 받지 못하는 자료이므로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내용과 회신내용 비교표에서 금융의 신고건수와 회신건수가 다른 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A** 신고내역 검증에서 건수 비교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것이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회신받지 못한 계좌를 직접 확인하여 신고한 경우, 채무에서 금융채무가 아닌 건물임대 채무, 사인간채무가 있어 신고한 경우 등은 회신건수와 신고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내역검증에서 여러 가지 확인사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 본인과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를 준 것이 있을 경우 건물임대 채무는 누락하지 않았는지 등의 내용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수정 없이 다음으로 진행 가능한 검토 페이지입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총괄표로 이동하여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요약서

Q 변동요약서의 가액변동 증감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A 가액변동 증감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증권, 회원권 등 각 재산항목 상세화면에서 가액변동여부에 '예'로 체크된 항목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 자동차의 평가액, 증권의 평가액처럼 변동되는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액이 합산 된 금액입니다.

Q 변동요약서에 순재산 증감 사유(필수) 항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나요?

A 전체적인 재산의 증가 또는 감소한 주된 이유, 재산 형성과정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본인소득과 본인 외 소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이전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의 등록기준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하며 세전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수정

### Q 신고서 제출 후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제출기한일(3.2) 이전에는 메인화면 '신고서 수정' 클릭하여 바로 수정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3.12.까지 '신고서수정요청'을 클릭하여 기관 윤리업무 담당자 승인 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 수정을 했다면 반드시 [제출하기]까지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Q 신고서 제출 후 제출한 신고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 A 신고서 제출 후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에서 제출한 신고내역과 접수증을 언제든지 열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FAQ

발 행 일 2021년 1월

발 행 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TEL : 044-201-8467  
TEL : 044-201-8482

인 쇄 처 (주)경성문화사 TEL : 044-868-5591

---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